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0.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 10. 14. 유동균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3. 10. 15.
- 다. 상정일자 :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3. 10. 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동균 의원)

가. 제안이유

- 1)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2)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가)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 (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일부는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인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은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임.
- 이에 마포구에서는 관리주체가 없거나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위촉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등 년 4회에 걸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한정하여 안전점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소규모 공동 주택이 안전점검을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